우리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의 발생발전

김 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일제의 사법기구를 없 애고 진정한 인민적사법기관을 조직하였으 며 인민재판제도를 세우고 공정한 인민적재 판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제를 내오 도록 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제5권 153 폐지)

우리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인민들자신이 직접 선출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 판 사와 꼭같은 권한을 가진 재판소구성성원 으로 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재판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 리의 재판이 말그대로 인민을 위하여 인 민들자신이 진행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 인 재판으로 되게 하며 인민대중을 국가 의 주인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튼튼히 준 비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의 사법건설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에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제도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인민참심원제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형사재판제도를 짓부시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유격근거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 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구현하여 립 법과 행정, 사법의 모든 기능을 다 맡아 수 행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진정한 인민의 정 권인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 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와 질서를 청산하 고 새로운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제도 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와 제 도, 온갖 악법을 철폐하고 인민들의 민주 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 질서와 사법제도를 세웠다.

유격구들에서는 인민혁명정부의 지도밑에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친일주구를 비롯한 반혁명분자들과 혁명적법질서를 파괴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인민들자신이 조직운영하는 군중심판을 열고 혁명의 이름,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징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우리의 재판을 인민대중의 혁명 적법의식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조 직운영하고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철 저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적이며 민주주의 적인 진정한 인민의 재판으로 되게 할데 대한 사상과 고귀한 업적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참심원제도의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는 무엇보다도 해방후 인민재판제도의 수립과 함께 발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시면서 그 중 요한 부분으로서 인민참심원제도를 마련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 하시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새 로운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모든 민주주 의적개혁들과 함께 사법분야를 민주화할 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법의 민주화방침은 우리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였던 일제의 파쑈적인 사법기구와 그 실현수단이였던 일제의 모든 악법들을 철저히 없애고 인민대중의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법률을 제정공포하며 인민대중의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인민재판기관을 세우고 인민재판제도를 확립하는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발동하시여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일제파쑈통치기구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정권기관들을 조직하는 사업과 함께 인민의 재판소들을 조직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몸소 키우신 혁명투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면서 인민들을 조직발동하여 인민들자신이 사법기관을 비롯한일제통치기구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지방정권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들과 함께 지방재판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34(1945)년 11월에 중앙에 행정10국의 한개 국으로서 사법국을 내오도록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사법기관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재판소를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꾸리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제도를 수립하시고 판사와 함께 인민

참심원들을 인민대표제기관에서 선거하도 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 23일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4호와 주체35(1946)년 3월 6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비롯하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법문건들에서 재판기관을 인민적기초우에 올려세우고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재판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 1명과 재판에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인민의 대표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며 판사와 참심원은 선거제로 할데 대한 원칙을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후 모든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설수 있게 됨에 따라 주체35(1946)년 11월에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각급지방인민위원회들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신데 이어 재판기관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주체 36(1947)년 1월 14일 재판기관선거의 목적과 판사를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선거방법과 절차, 선거실시날자 등을 규정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재판기관선거에 관한 법령인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주체36(1947)년 1월 20일부터 이해 2월까지의 사이에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서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을 선거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이 명 실공히 근로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재판소를 참다운 인민의 대 표로 구성할뿐아니라 재판에 참가한 인민 참심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도록 법적당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참심원제도를 법화한 주체34 (1945)년 11월 23일부 북조선 사법국 포고 제4호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을 비롯한 여러 법령들에서 인민참심원들에게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꼭같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판단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시였다.

인민참심원들이 재판활동에서 판사와 꼭 같은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 련됨으로써 재판사업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확 고히 보장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는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주체37(1948)년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에서는 재 판소의 임무와 조직 및 활동원칙들을 전 면적으로 규제하면서 인민참심원제도를 법 적으로 고착하였다.

헌법에서는 각급 재판소는 인민의 대표기관인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구성하며 판사 또는 각급 인민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이 할수 있다는것과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자격, 재판에서 그들의 권리와 임무 등을 규제함으로써 우리의 재판을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재판으로 되게 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38(1949)년 7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시,군 인민재판소 및 도 재판소 선거에 관하여》와 선거규정에 따라 실시된 재판소들에 대한 새로운 선거 에 의하여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 명과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들로 재판소의 인민참심원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당시 선거된 인민참심원의 구성성분을 보면 로동자 34%, 빈농민 48%, 사무원 13.3%, 중농 13%, 기타 3.3%였으며 그중 너성참심원이 17.2% 였다.

해방후 사법기관을 민주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와 재판소의 조직과 활 동에 관한 헌법적원칙들에 토대하여 주체 39(1950)년 3월 3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재 판소구성법이 채택됨으로써 각급 재판소 들을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형 사, 민사사건을 근로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확히 심리해결할수 있는 위력한 법 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의 인 민참심원제도는 전시환경의 특수한 조건 에 맞게 계속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의 어려운 조 건에서도 지방재판소선거를 제때에 실시 하여 판사와 인민참심원대렬을 튼튼히 꾸 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5월 31일 내각지시 제701호로 인민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난한 지역들에서는 시, 군인민재판소들을 해당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다음기에 열리는 인민위원회에서 승인받도록 하심으로써 전시조건하에서도 지방재판소들에 대한 선거를 제때에 실시하여 재판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재판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해나갈수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남반부지역 에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 쟁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전쟁초기 사법기관앞에는 지체없이 해방 된 남반부지역에 나가 남반부인민들을 도 와 괴뢰사법기구를 짓부시고 인민의 사법 기관을 조직하여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 들과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의 책동을 철저 히 진압하며 민주주의적질서를 세우고 민 주개혁의 성과적수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 장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여주신 조치에 따라 사법성은 즉시 중앙과 지방의 우수한 간부들과 일군들을 해방된 남반부지역들에 과견하여 괴뢰사법제도를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재판기관을 조직하며 해당 인민위원회들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을 선거하도록 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해방된 남반부지역들에는 민주주의적인 인민재판기관이 조직되여 친일파, 친미파,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진압하며 민주주의적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는 다음으로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과정에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인민참심원제도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새롭게 제정 및 수정보충되여온 사회주의헌법과 재판소구 성법,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더욱 확 고히 고착되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고 그후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여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재판활동에서의 민주주의원칙의하나인 인민참심원제도가 변함없이 고착되였다. 뿐만아니라 인민참심원제도는 주체65(1976)년 1월 10일 재판소구성법이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새로 채택되고 그후 주체87(1998)년 7월과 11월에 수정보

충되면서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형 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도 제1심재판소 구성원칙으로 확고히 고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인민참 심원제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시키는 것과 함께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 휘되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마다 인민참심원선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참심원대렬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인민참심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급 재판소들의 인민참심원 인원수와 직업별 및 녀성구성 비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시여 인민참 심원선거에서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하 시였으며 인민참심원들에게 인민참심원증 명서를 발급해주고 새로 선거되는 인민참 심원들을 위한 실무강습을 조직진행하여 그 들이 우리 나라 재판제도의 우월성과 인 민참심원의 권한과 임무, 인민참심원사업 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잘 알고 재판 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 합을 다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이처럼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오면서 우리의 재판이 인민민주주의독재실현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 인민참심원제도는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장하는데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재판담당자제도로서의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